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갑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197

발의연월일: 2020. 7. 20.

발 의 자: 송갑석·김원이·인재근

문진석 · 김진표 · 이형석

홍익표 · 조오섭 · 야진비

안호영 · 박광온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금지의 상대방을 공사업자로 한정하여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한 경우 현행 법규상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. 이에 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공사업자뿐 아니라 무등록업자에게 전기공사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한 경우에도 하도급 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 및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함.

또한 불법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시 시정명령을 거치지 않고 영업 정지가 가능하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 6호·제8호, 제14조제1항·제2항, 제27조제1호 및 제28조제1항4호의2 등). 법률 제 호

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6호 중 "다른 공사업자"를 "제3자"로 하고, 같은 조 제8호 중 "공사업자"를 "자"로 한다.

제14조제1항 본문 중 "공사업자에게"를 "자에게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"공사업자"를 "자"로 한다.

제27조제1호를 삭제한다.

제28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6호 중 "제1호"를 "제2호"로 한다.

4의2. 제14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주거 나 다시 하도급을 준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"하도급(下都給)"이란 도급받	6
은 전기공사의 전부 또는 일	
부를 수급인이 <u>다른 공사업자</u>	<u>제3자</u>
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.	<u>.</u>
7. (생 략)	7. (현행과 같음)
8. "하수급인(下受給人)"이란 수	8
급인으로부터 전기공사를 하	
도급받은 <u>공사업자</u> 를 말한다.	<u>\text{\tince{\text{\tex{\tex</u>
9. ~ 11. (생 략)	9. ~ 11. (현행과 같음)
제14조(하도급의 제한 등) ① 공	제14조(하도급의 제한 등) ①
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	
다른 <u>공사업자에게</u> 하도급 주어	<u>자에게</u>
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대통령령	
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도급받은	
전기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	
자에게 하도급 줄 수 있다.	
②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전기	②
공사를 다른 <u>공사업자</u> 에게 다시	<u></u> <u></u> Z <u>}</u>
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. 다	
만, 하도급받은 전기공사 중에	
전기기자재의 설치 부분이 포함	

되는 경우로서 그 전기기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전기기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공 사를 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줄 수 있다.

③ • ④ (생 략)

제27조(시정명령 등) 시·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.

1. 제14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하도급을주거나 다시 하도급을 준 경우

2. ~ 8. (생략)

제28조(등록취소 등) ① 시·도지 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·제3호· 제4호·제7호 또는 제8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 여야 한다.

1. ~ 4. (생략)

<u>.</u>
③・④ (현행과 같음)
제27조(시정명령 등)
<u>_</u>
·
<u><삭 제></u>
2. ~ 8. (현행과 같음)
제28조(등록취소 등) ①
•

<신 설>

- 5. (생략)
- 6. 제27조<u>제1호</u>부터 제5호까지 6. ----<u>제2호</u>-----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전기공사 가 완료되어 같은 조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경우

6의2. ~ 8. (생 략)

② ~ ⑤ (생 략)

<u>4의2.</u>	제14	조제	1항	본문	또는
제2호	항 본	문을	위병	반하여	하도
급을	주7	식나	다시] 하도	급을
<u>준</u> 7	<u> 경우</u>				

- 5. (현행과 같음)

6의2. ~ 8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